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6
------------	-----

2016년 02월 26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2월 7일 유찬중·이승로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0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2.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찬중 의원)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자구 수정 등(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기타 조항 변경 등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유찬중·이승로 의원이 공동 발의(찬성자 8명) 하였음.
-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간판을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추가하여,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간판의 구체적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의 설치규정이 도입되었음¹⁾.

- 입간판 관련규정 신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4.12.9.)
 -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함 (제3조제6의2)
 -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에 포함 (제5조제1항제5의2)
 -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 (제12조제8항)
 - 구체적 표시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위임(제12조제7항 및 제20조제2항)
- ※ 입간판이란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

1) “입간판의 설치방법”에 관한 조례 규정을 신설한 시·도는 부산광역시(2015.5.27), 인천광역시(2015.5.27), 울산광역시(2015.10.30), 강원도(2015.10.8), 전라북도(2015.10.12.), 경상남도(2015.10.29)로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 개정조례안은 입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으로 자사광고에 한해 설치하되, 전기 사용이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간판의 높이와 면적, 바닥면의 길이 등 입간판의 규격과 설치 시간 및 장소, 입간판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것임.
- 한편, 개정조례안에서는 입간판 설치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관광특구, 상업지역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시범 운영을 한 후 2017년 1월 31일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입간판의 표시방법(안 제9조의2 제1항~제3항)

- 자사광고만 표시 가능
- 전기사용이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 간판 윗부분 높이 1.2m 이하, 1면의 면적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 1.2㎡
- 간판의 무게중심: 아래로, 바닥면: 가로 50/세로 70cm 이하
-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보행자 통로 설치 금지
- 기상특보 등 안전사고 우려시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안 이동 의무화

※ 시범구역 선정 및 운영(안 제9조의2 제4항 및 제32조)

- 2016년 말까지 시범운영
- 관광특구, 상업지역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 등 일정 구역
- 시범운영 결과 확대시행 여부 의견 : 2017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 개정조례안은 현재 불법적으로 설치되는 입간판을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대로 현실에 맞게 규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입간판의 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은 신고만으로도 설치

가 가능하도록 한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고, 특정지역에 우선 시행하는 규정 또한 상위법령에서 설치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규정²⁾이 없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 한편, 개정조례안에서 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입간판 설치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초래될 수 있는 보행자 불편 및 위해, 시각 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입간판의 형태 및 재질 등의 디자인 수준 향상 유도, 간판의 총수 제한 범위, 업소간의 자율적 협정 유도 및 정기적인 단속³⁾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심사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3)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시행일 2016.7.7).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6
----------	-----------

제안일자 : 2016. 02. 26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일부 규정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시범구역 선정 및 운영 규정으로 입간판 설치지역을 제한한 안 제9조의2제4항 및 안 제32조를 삭제하고,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2제4항 및 안 제3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후단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신 설 ></p>	<p>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 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사 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 	<p>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 방법)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
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
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
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
미터 이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단 보행
자 통로에는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
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
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
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

지 입간판의 표시방법
의 타당성을 재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다만, 제9조
의2제1항내지 제3항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 〈단서 삭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13조 및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제2항----- ----- -----.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 -----.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 -----.
< 신 설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p> <p>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p>

현 행	개 정 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계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 ----- -----.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② 영 제20조제2항 ----- -----. ③ 영 제20조제2항 ----- -----.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4조(벽보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 ----- -----.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p>	<p>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20조제2항----- ----- -----.</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 ----- ----- -----.</p>